

의안번호	제 243 호
의 결 연 월 일	2011년 월 일 (제 305 회)

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1년 11월 9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3
----------	-----

제출연월일 : 2011년 11월 9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현행 조례에 대한 일제정비 자체계획("11.7.14.)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정 및 시대적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조문정비가 필요함에도 개정시기를 놓치거나 방치함으로써 현실과 불부합하게 된 조례의 조문에 대하여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현실에 적합한 조례의 품질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현행 조례상의 인용법령 및 조문, 조직 명칭 등 상위법령 등과 상이한 사항에 대한 일괄개정
 - 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 등 33개 조례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해당없음

6.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 등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2조(「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2조제2호”를 “법 제2조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같은 법 제31조”를 “같은 법 제25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법 제2조제4호”를 “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5조 중 제목 다음에 “학자금”을 “①학자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1조”를 “법 제25조”로 한다.

제3조(「충청북도 명예연구소 운영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명예연구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6조 중 “기획관실”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제4조(「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제5조(「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지방공기업법」 제2조”를 “「지방공기업법」 제13조”로 한다.

제6조(「충청북도 보증채무 관리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0조”를 “「지방재정법」 제13조”로 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영 제21조제1항”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8조(「충청북도 부패유발제도 개선청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부패유발제도 개선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충청북도감사위원회(“위원회”라 한다)”를 “충청북도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9조(「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감사관”으로 한다.

제10조(「충청북도 공인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방재정법 제112조”를 “「지방재정법」 제91조”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111조 규정에 의거”를 “「지방재정법」 제89조 규정에 의거 수입대체경비출납원”으로 한다.

제11조(「충청북도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1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으로 한다.

제12조(「충청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82조”를 “「지방자치법」 제90조”로 한다.

제13조(「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제5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따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를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로 한다.

제15조(「충청북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한다.

제16조(「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5조”를 “「지방자치법」 제144조”로 하고, “의료법 제30조제2항”을 “「의료법」 제33조”로 한다.

제17조(「재단법인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의 개정) 재단법인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지방자치법」 제104조”로 한다.

제18조(「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제19조(「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20조(「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여성농업인 육성법”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으로 한다.

제21조(「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산어법”을 “「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한다.

제22조(「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를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로 하고, “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환경
보전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이하 "환경정책위
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7조 중 “지사”를 “도지사”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제23조(「충청북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를 “충청북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조례”로 한다.

제1조, 제2조제1호 중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
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제2조제3호, 제2조제5호, 제3조3호, 제4조제1항, 제4조제1항
제1호, 제4조제1항제2호, 제4조제1항제3호, 제4조제1항제4호, 제4조제1항
제5호, 제4조제1항제6호, 제4조제1항제7호, 제5조의 제목, 제5조제1항, 제5조
제2항제1호, 제5조제2항제2호, 제5조제2항제3호, 제5조제2항제4호, 제5조
제2항제5호, 제6조의 제목, 제6조제1항, 제6조제2항, 제6조제2항제1호, 제6조
제2항제2호, 제6조제2항제3호, 제7조제1항, 제7조제2항, 제7조제4항, 제8조의
제목, 제8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의 제목, 제9조 본문, 제10조의 제목,
제10조제1항, 제10조제1항제2호, 제10조제1항제4호, 제10조제2항, 제11조
제1항, 제12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3조의 제목, 제13조제1항, 제14조의
제목, 제14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 제16조 본문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를 “녹색제품구매촉진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충청북도 친환경상품구매 촉진협의회”를 “충청
북도 녹색제품구매 촉진협의회”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친환경 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24조(「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충청북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제25조(「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의 개정) 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를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업무담당사무관“을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26조(「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예산의 범위안에서“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27조(「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충청북도세부과징수규칙“을 “「충청북도 도세 기본 부과·징수 규정」“으로 한다.

제28조(「충청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22조의2제3항“을 “법 제22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충청북도 건축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4호 중 “건설문화위원회”를 “건설소방위원회”로 한다.

제35조 중 “「건축법」 제11조”를 “「건축법」 제17조”로 한다.

제30조(「충청북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예산의 범위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31조(「충청북도 주택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주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주택법시행령”을 “법”으로 한다.

제32조(「충청북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수상레저 안전법」 제2조제6호”를 “「수상레저 안전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14조 중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를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1. 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위원회 구성 등) ① (생략)</p> <p>1. 당연직 위원은 <u>도의 기획관리실장</u>과 <u>교육청의 기획관리국장</u>으로 한다.</p> <p>2. (생략)</p> <p>②~③ (생략)</p>	<p>제11조(위원회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p> <p>1. 당연직 위원은 <u>도의 기획조정실장</u>과 <u>교육청의 기획관리국장</u>으로 한다.</p> <p>2.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2.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학자금 이자지원”이란 「<u>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u>」(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보증으로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p> <p>2. “고등교육기관”이란 <u>법 제2조제2호</u>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대학(대학원 제외)을 말한다.</p> <p>3. (생략)</p> <p>4. “신용보증”이란 제3호의 도 지역 대학생이 <u>법 제6조</u>에 따른 재단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채무를 <u>같은 법 제31조</u>에 따른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p> <p>5. “금융기관”이란 <u>법 제2조제4호</u>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학자금 이자지원”이란 「<u>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u>」(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보증으로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p> <p>2. “고등교육기관”이란 <u>법 제2조제6호</u>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대학(대학원 제외)을 말한다.</p> <p>3. (생략)</p> <p>4. “신용보증”이란 제3호의 도 지역 대학생이 <u>법 제6조</u>에 따른 재단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채무를 <u>같은 법 제25조</u>에 따른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p> <p>5. “금융기관”이란 <u>법 제2조제7호</u>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p>
<p>제5조(학자금 이자지원 대상) <u>학자금 이자지원 대상은 제2조제3호의</u></p>	<p>제5조(학자금 이자지원 대상) ① <u>학자금 이자지원 대상은 제2조제3호</u></p>

지역 대학생으로 한다.

② 학자금 이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역 대학생은 법 제31조에 따라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보증으로 재단 또는 금융기관에 학자금 대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의 지역 대학생으로 한다.

② 학자금 이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역 대학생은 법 제25조에 따라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보증으로 재단 또는 금융기관에 학자금 대출 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충청북도 명예연구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지정) ① 명예연구소 지정은 연2회(1월, 7월)로 하되, 시장·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희망자를 파악하여 1월전까지 <u>기획관실</u>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u>기획관실</u>에서는 관련 실·국·본부의 사전검토와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연구소를 지정하였을 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정패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현판을 교부한다.</p> <p>제6조(행·재정적 지원) 지정된 명예연구소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하되, 총괄업무는 <u>기획관실</u>에서 담당하고 세부지원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실·국·본부에서 주관한다.</p> <p>1.~5. (생략)</p>	<p>제5조(지정) ① 명예연구소 지정은 연2회(1월, 7월)로 하되, 시장·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희망자를 파악하여 1월전까지 <u>정책기획관</u>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u>정책기획관</u>에서는 관련 실·국·본부의 사전검토와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연구소를 지정하였을 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정패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현판을 교부한다.</p> <p>제6조(행·재정적 지원) 지정된 명예연구소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하되, 총괄업무는 <u>정책기획관</u>에서 담당하고 세부지원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실·국·본부에서 주관한다.</p> <p>1.~5. (현행과 같음)</p>

4.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 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u>폐질등급</u>”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될 경우에 한정한다.</p> <p>② (생략)</p> <p>제14조(심의회회의 간사) ① (생략)</p> <p>② 간사는 도 <u>기획관</u>으로 한다.</p>	<p>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 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u>장애등급</u>”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될 경우에 한정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4조(심의회회의 간사) ① (현행과 같음)</p> <p>② 간사는 도 <u>정책기획관</u>으로 한다.</p>

5.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생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을 적용 한다.</p>	<p>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 한다.</p>

6. 충청북도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0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는 주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는 주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7.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3. (생략)</p> <p>4. "첨단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로서 산업발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에서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개발 또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3. (현행과 같음)</p> <p>4. "첨단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로서 산업발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에서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개발 또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말한다.</p>

8. 충청북도 부패유발제도 개선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요건심사 등) ① 도지사는 제도 개선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u>충청북도감사위원회</u>(" 위원회 " 라 한다)에 제도개선 대상여부 등 요건심사에 필요한 자문을 받아야 한다.</p> <p>② (생략)</p>	<p>제5조(요건심사 등) ① 도지사는 제도 개선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u>충청북도감사자문위원회</u>(이하 " 위원회 " 라 한다)에 제도개선 대상여부 등 요건심사에 필요한 자문을 받아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9.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생략)</p> <p>② 간사는 <u>자치행정과장</u>이 되고, 서기는 갈등업무담당자가 된다.</p> <p>③ (생략)</p>	<p>제8조(간사 및 서기) ① (현행과 같음)</p> <p>② 간사는 <u>감사관</u>이 되고, 서기는 갈등업무담당자가 된다.</p> <p>③ (현행과 같음)</p>

10.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u>지방재정법 제112조</u> 규정에 의거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p> <p>제7조(각인) ① (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u>지방재정법 제111조</u> 규정에 의거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p>	<p>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u>지방재정법</u>」 제91조 규정에 의거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p> <p>제7조(각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u>지방재정법</u>」 제89조 규정에 의거 수입대체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p>

11.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 제101조제2항</u>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u>」 제1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12. 충청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자치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사무기구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 2. (생략) ②~③ (생략) 	<p>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자치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사무기구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13.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① 공공시설내에 매점과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허가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p> <p>1.~2. (생략)</p> <p>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한 부모 가족</p> <p>4. (생략)</p> <p>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p> <p>② (생략)</p>	<p>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① 공공시설내에 매점과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허가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p> <p>1.~2. (현행과 같음)</p> <p>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한 부모 가족</p> <p>4. (현행과 같음)</p> <p>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p> <p>② (현행과 같음)</p>

14.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운영)</p> <p>① 사회복지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되, 그 기능은 <u>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u>가 이를 대행한다.</p> <p>② (생략)</p>	<p>제5조(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운영)</p> <p>① 사회복지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되, 그 기능은 <u>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u>가 이를 대행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15. 충청북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제7조(보고등) ① (생략)</p> <p>② 시장·군수는 분기별로 <u>의료보호기금</u>의 운용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분기 종료후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7조(보고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시장·군수는 분기별로 <u>의료급여기금</u>의 운용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분기 종료후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16. 충청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및 치매 질환자의 영양과 진료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의료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충청도립노인전문병원(이하 "노인전문병원"이라 한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및 치매 질환자의 영양과 진료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의료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도립노인전문병원(이하 "노인전문병원"이라 한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17. 재단법인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위탁) 충청북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업무 및 종합지원체제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 기금의 운용에 관한 업무를 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10조(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위탁) 충청북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업무 및 종합지원체제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 기금의 운용에 관한 업무를 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p>

18.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6. (생략)</p> <p>7. “연구소”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말한다.</p> <p>8.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를 말한다.</p> <p>9.~18. (생략)</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6. (현행과 같음)</p> <p>7.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말한다.</p> <p>8.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를 말한다.</p> <p>9.~18. (현행과 같음)</p>

19.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11. (생략)</p> <p>12. “시장정비사업시행자”라 함은 「<u>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u>」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p> <p>13. (생략)</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11. (현행과 같음)</p> <p>12. “시장정비사업시행자”라 함은 「<u>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u>」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p> <p>13. (현행과 같음)</p>

20.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여성농어업인단체”란 「<u>여성농업인 육성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p> <p>3.~4. (생략)</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현행과 같음)</p> <p>2. “여성농어업인단체”란 「<u>여성농어업인 육성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p> <p>3.~4. (현행과 같음)</p>

21.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농수산물수출품”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와 제7호에서 정의한 농수산물과 식품, 「수산물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어업생산물을 다른 나라에 판매할 목적으로 취급하는 물품을 말한다.</p> <p>2. (생략)</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농수산물수출품”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와 제7호에서 정의한 농수산물과 식품,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어업생산물을 다른 나라에 판매할 목적으로 취급하는 물품을 말한다.</p> <p>2. (현행과 같음)</p>

22.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② 도지사는 실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u>충청북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u>」 제3조에 의하여 구성된 <u>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u>(이하 "환경보전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⑤ (생략)</p> <p>제7조(중지명령 등) <u>지사</u>는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p> <p>제13조(보호야생 동·식물의 지정) ① (생략)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야생동·식물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u>환경보전자문위원회</u>의 심의를 거쳐 종명, 지정연월일, 지정사유, 주요 생태적 특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생략)</p>	<p>제3조(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실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u>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u>」 제3조에 의하여 구성된 <u>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u>(이하 "환경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⑤ (현행과 같음)</p> <p>제7조(중지명령 등) <u>도지사</u>는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p> <p>제13조(보호야생 동·식물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야생동·식물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u>환경정책위원회의</u> 심의를 거쳐 종명, 지정연월일, 지정사유, 주요 생태적 특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p>

23. 충청북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u>충청북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u></p>	<p><u>충청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u>」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가 <u>친환경상품</u>의 구매를 -----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u>」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가 <u>녹색제품</u>의 구매를 -----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p>	<p>제2조(정의) -----</p>
<p>1. " <u>친환경상품</u> " 이란 ----- 상품으로서 「<u>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u>」 (이하 " 법 " 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p> <p>2. ----- <u>친환경상품</u>의 -----</p> <p>3. ----- <u>친환경상품</u>의 -----</p> <p>4. (생략)</p> <p>5. ----- <u>친환경상품</u>의 -----.</p>	<p>1. " <u>녹색제품</u> " 이란 ----- 상 품으로서 「<u>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u>」 (이하 " 법 " 이라 한 다) 제2조에서 정한 -----</p> <p>2. ----- <u>녹색제품</u>의 -----</p> <p>3. ----- <u>녹색제품</u>의 -----</p> <p>4. (생략)</p> <p>5. ----- <u>녹색제품</u>의 -----.</p>
<p>제3조(적용대상 공공기관) -----</p>	<p>제3조(적용대상 공공기관) -----</p>
<p>1.~2. (생략)</p> <p>3. ----- <u>친환경상품</u>의 -----</p>	<p>1.~2. (생략)</p> <p>3. ----- <u>녹색제품</u>의 -----</p>
<p>제4조(<u>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u>) ①</p>	<p>제4조(<u>녹색제품구매촉진협의회</u>) ①</p>
<p><u>친환경상품 구매촉진</u>을 위한 ----- 충청북도 <u>친환경상품구매 촉진협의회</u> (이하 " <u>협의회</u> "라 한다)-----</p>	<p><u>녹색제품 구매촉진</u>을 위한 ----- 충청북도 <u>녹색제품구매 촉진협의회</u> (이하 " <u>협의회</u> "라 한다)-----</p>
<p>1. <u>친환경상품</u> -----</p> <p>2. <u>친환경상품</u> -----</p> <p>3. <u>친환경상품</u> -----</p> <p>4. ----- <u>친환경상품</u> -----</p>	<p>1. <u>녹색제품</u> -----</p> <p>2. <u>녹색제품</u> -----</p> <p>3. <u>녹색제품</u> -----</p> <p>4. ----- <u>녹색제품</u> -----</p>

- 5. 관내 친환경상품 -----
- 6. 친환경상품 -----
- 7. 그 밖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

② 협의회의 기능은 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5조(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① ----- 친환경상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

- ② (생략)
- 1. 친환경상품 -----
- 2. 친환경상품 -----
- 3.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
- 4. 관내 친환경상품 -----
- 5. 그 밖에 도민의 친환경상품 ----

제6조(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친환경상품 -----

- ② 제1항의 친환경상품 -----.
- 1. 친환경상품 ----- 친환경상품 구매계획
- 2. 친환경상품 -----
- 3. ----- 친환경상품 -----

③ (생략)

제7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 친환경상품 ----- 친환경상품 판단기준-----

- 1.~5. (생략)
- ② 환경부장관이 친환경상품 -----

- 5. 관내 녹색제품 -----
- 6. 녹색제품 -----
- 7.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

② 협의회의 기능은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5조(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① ----- 녹색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

- ② (생략)
- 1. 녹색제품 -----
- 2. 녹색제품 -----
-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
- 4. 관내 녹색제품 -----
- 5. 그 밖에 도민의 녹색제품 ----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 녹색제품 구매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

- ② 제1항의 녹색제품 -----.
- 1. 녹색제품 ----- 녹색제품 구매계획
- 2. 녹색제품 -----
- 3. ----- 녹색제품 -----

③ (생략)

제7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 녹색제품 ----- 녹색제품 판단기준-----

- 1.~5. (생략)
- ②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 -----

<p>③ (생략)</p> <p>④ ----- <u>친환경상품</u> 기준으로 -----</p>	<p>③ (생략)</p> <p>④ ----- <u>녹색제품</u> 기준으로 -----</p>
<p>제8조(<u>친환경상품</u>의 구매실적) ① ----- <u>친환경상품</u> 구매실적에는 -----</p> <p>1.~5. (생략)</p> <p>② <u>친환경상품</u>의 -----</p> <p>③ (생략)</p>	<p>제8조(<u>녹색제품</u>의 구매실적) ① ----- <u>녹색제품</u> 구매실적에는 -----</p> <p>1.~5. (생략)</p> <p>② <u>녹색제품</u>의 -----</p> <p>③ (생략)</p>
<p>제9조(<u>친환경상품</u> 구매의무 범위) ----- <u>친환경상품</u> -----</p> <p>1.~3. (생략)</p>	<p>제9조(<u>녹색제품</u> 구매의무 범위) ----- <u>녹색제품</u> -----</p> <p>1.~3. (생략)</p>
<p>제10조(<u>친환경상품</u> 구매예외) ① ----- <u>친환경상품</u> -----</p> <p>1. (생략)</p> <p>2. <u>친환경상품</u>의 -----</p> <p>3. (생략)</p> <p>4. <u>친환경상품</u>의 -----</p> <p>② ----- <u>친환경상품</u>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p>	<p>제10조(<u>녹색제품</u> 구매예외) ① ----- <u>녹색제품</u> -----</p> <p>1. (생략)</p> <p>2. <u>녹색제품</u>의 -----</p> <p>3. (생략)</p> <p>4. <u>녹색제품</u>의 -----</p> <p>② ----- <u>녹색제품</u>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p>
<p>제11조(교육) ① 도지사는 <u>친환경상품</u> 구매촉진을 위하여 -----</p> <p>② (생략)</p>	<p>제11조(교육) ① 도지사는 <u>녹색제품</u> 구매촉진을 위하여 -----</p> <p>② (생략)</p>
<p>제12조(융자 및 판매 지원) ① ----- <u>친환경상품</u> -----</p> <p>② ----- <u>친환경상품</u>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p>	<p>제12조(융자 및 판매 지원) ① ----- <u>녹색제품</u> -----</p> <p>② ----- <u>녹색제품</u>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p>
<p>제13조(<u>친환경상품</u> 정보제공) ① 도지사는 <u>친환경상품</u>의 -----</p>	<p>제13조(<u>녹색제품</u> 정보제공) ① 도지사는 <u>녹색제품</u>의 -----</p>

② (생략)

제14조(친환경상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 친환경상품의 -----

②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을 위한 -----

③ ----- 친환경상품의 -----

제15조(기관 평가) ① ----- 친환경
상품 -----

② ----- 친환경 상품 -----

제16조(포상) 도지사는 친환경상품의

② (생략)

제14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 녹색제품의 -----

② ----- 녹색제품 구매촉진
을 위한 -----

③ ----- 녹색제품의 -----

제15조(기관 평가) ① ----- 녹색
제품 -----

② ----- 녹색제품 -----

제16조(포상) 도지사는 녹색제품의

24.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환경보전종합계획의 수립) ①~② (생략) ③ 도는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도민과 시장·군수 및 충청북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생략)</p>	<p>제11조(환경보전종합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도는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도민과 시장·군수 및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p>

25. 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u>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u></p> <p>제1조(목적) 본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u>충청북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8조(간사와 서기) ① (생략) ② 간사는 환경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u>업무담당사무관</u>이 된다.</p>	<p><u>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u></p> <p>제1조(목적) 본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u>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8조(간사와 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환경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u>업무담당팀장</u>이 된다.</p>

26.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위원회 운영) ①~③ (생략)</p> <p>④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u>예산의 범위안에서</u> 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3조(위원회 운영) ①~③ (현행과 같음)</p> <p>④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u>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u> 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27.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제26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u>충청북도세부과징수규칙</u>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p>	<p>제26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u>「충청북도 도세 기본 부과·징수 규정」</u>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p>

28. 충청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충청북도 도로명주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③ (생략)</p>	<p>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충청북도 도로명주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29.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구성) ①~② (생략)</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된다. 다만,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p> <p>1.~3. (생략)</p> <p>4. 충청북도의회 <u>건설문화위원회</u> 위원</p> <p>④ (생략)</p>	<p>제4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된다. 다만,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p> <p>1.~3. (생략)</p> <p>4. 충청북도의회 <u>건설소방위원회</u> 위원</p> <p>④ (현행과 같음)</p>
<p>제35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 포함한다)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별표1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제35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 포함한다)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별표1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30. 충청북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수당 등)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9조(수당 등)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31. 충청북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 주택법시행령 제38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할 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전 미리 용적율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주택법시행령 제42조의16 제1항에서“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라함은 100분의 60을 말한다.</p>	<p>제13조(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 별 제38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할 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전 미리 용적율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주택법시행령 제42조의16 제1항에서“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라함은 100분의 60을 말한다.</p>

32. 충청북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첨단의료복합단지”란 의료연구 개발의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u>보건복지가족부장관</u>이 지정·고시하는 단지를 말한다.</p> <p>2.~8. (생략)</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첨단의료복합단지”란 의료연구 개발의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u>보건복지부장관</u>이 지정·고시하는 단지를 말한다.</p> <p>2.~8. (현행과 같음)</p>

33. 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2. (생략)</p> <p>3. “여름철 물놀이장소(이하 “물놀이장소”라 한다)”라 함은 「<u>수상레저 안전법</u>」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으로서 충청북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p> <p>4.~6. (생략)</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2. (현행과 같음)</p> <p>3. “여름철 물놀이장소(이하 “물놀이장소”라 한다)”라 함은 「<u>수상레저 안전법</u>」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으로서 충청북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p> <p>4.~6. (현행과 같음)</p>
<p>제14조(치료·보상) 수상구조대원이 물놀이안전 활동 중 부상 또는 사망한 때의 치료와 보상은 「<u>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u>」의 치료·보상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4조(치료·보상) 수상구조대원이 물놀이안전 활동 중 부상 또는 사망한 때의 치료와 보상은 「<u>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u>」의 치료·보상의 규정을 준용한다.</p>